

『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8월 30일

나. 발 의 자 : 양진오, 권재욱, 김낙관, 김재상, 김재우, 박교상
송용자, 신문식, 안장환, 이선우, 이지연, 장미경
장세구, 최경동, 홍난이 의원(15인)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9월 20일

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양 진 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포획 포상 기준에 멧돼지를 추가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 대상 추가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8. 30. ~ 9. 6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대 운

- 본 「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포획 포상 기준에 멧돼지를 추가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는 물론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북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운영지침(2019.1.)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단가에 따라 멧돼지 한 마리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